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수수료

(2025-01-01, 전자파기술센터)

◆ 제품을 소형, 중형, 대형으로 분류하여 적용(AC/DC 전원 동일)

- * 소형 : 20 kg 이하의 제품으로 1인이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 * 중형 : 20 kg 이상, 50 kg 이하의 제품으로 2인이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 * 대형 : 50 kg 이상의 제품으로 3인이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초대형기기(중량 150 kg 이상)는 “대형3상” 수수료 적용)

◆ 단일모드 기준 수수료이며, 모드 추가시 기본수수료의 0.5배 추가

□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 관한고시 별표1” 관련)

(단위 : 천원)

| 대상기자재 | | |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 | | 제품구분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전자파강도 | 적합등록 | 자기적합확인 | 소형 단상 | 중형 단상 | 대형 단상 | 대형 3상 | |
| 가. 전파용설비류 및 기기류 : 전파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이를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치 및 설비·기기류 | 1) 산업용·과학용 전파용용기기류 : 9 kHz~400 GHz 주파수 범위 내에서 통신설비 이외의 목적으로 전파에너지가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기기 | o (정의) 전파를 이용하여, 재료의 가공, 검사, 분석, 또는 가열, 이온화, 진동, 입자의 가속과 같은 물리적, 생화학적 효과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국부적으로 전자기 방사의 형태로 유도성이나 방사성 커플링을 사용하는 50 W 이하의 산업용·과학용 전파이용기와 플라즈마 응용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초음파 세척기, 산업용 레이저 발전기, 플라스틱 예열기, 마이크로 전력 UV 방출기, 전기방전 부식기기, 레이저 용접기 및 커탕기(정격입력이 10 kVA 이하), 산업용·과학용 전자레인지 및 유도가열기기, 전파를 이용한 플라즈마·초음파·열 발생기기(생활가전기류 제외) | | ○ | | 1,958 | 2,755 | 3,557 | 5,347 | |
| | | ① 전자레인지 | | ○ | | 3,142 | | 3,989 | 5,875 | |
| | 2) 산업용·과학용 이외의 전파용용 설비 및 기기 : 전파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용·과학용 이외의 설비 및 기기 | ② 1,000 W 미만의 고주파 조명기기 | | ○ | | | | | | |
| | | ③ 가사용 저전압 전원설비를 이용하는 200 W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 | ○ | | - | - | - | - | |
| | | ④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11 kW 이하) | ○ | ○ | | | | | | |

| 대상기자재 | | |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 | 제품구분 |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전자파강도 | 적합등록 | 자기적합확인 | 소형 단상 | 중형 단상 | 대형 단상 | 대형 3상 | |
| | | ⑤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무선전력전송기기(200 W 이하) | ○ | ○ | | | | | | |
| | 3) 전력선통신기기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전선로에 주파수가 9 kHz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로서, 해당 설비로부터 3 m에서의 전기장의 세기가 500 μV/m 이하인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선 통신용 중계기, 전력선 통신 게이트웨이, 전력선통신 모뎀, 전력선통신 브릿지, 전력선 통신 제어장치, 전력선 냉난방 장치제어기 | | ○ | | | | | | |
|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과응용설비 ○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 | | | | | | | | |
| 나. 생활가전기류 : 정격 전류 16 A 이하 또는 정격입력 10 kW 이하이며, 생활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기기기로, 상업용도 포함한다. ※ 전동기의 정격입력은 실제 측정된 소비전력을 기준으로 한다. ※ 4)~11) : 계절가전 12)~16) : 주방가전 17)~18) : 이·미용가전 19)~26) : 생활가전 27)~29) : 건강가전 30)~31) : 게임오락기구 ※ 방사내성(RS) | 1) 전기청소기기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전동모터를 사용하여 공기, 물, 이물질을 빨아들여 청소하는 기기, 광택을 내거나 물걸레 청소 또는 용단의 세탁 등과 같이 바닥 청소를 하는 기기, 액체 또는 증기를 분사하여 바닥 등의 표면을 청소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공청소기, 물흡입청소기(물걸레 청소기 포함), 로봇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침구청소기, 고압세척기, 실내용청소차, 전기광택기 | | ○ | | 1,288 (720) | 1,906 (840) | 2,501 (1,080) | 3,883 (1,560)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2.5 kW를 초과하는 기기 | | | ○ | | | | | |
| | 2) 전기냉장·냉동기기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냉매의 증발열을 이용하는 기기로 컴프레서 및 반도체 냉각방식 등으로 구동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장·냉동기기(쇼케이스 포함),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 화장품냉장고, 주류냉장고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kW를 초과하는 기기 | | | ○ | | 1,906 (840) | | 2,501 (1,080) | 3,883 (1,560) |
| | 3) 전기세탁·탈수기기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의류(옷, 옷감 및 피혁 등)의 세탁 및 탈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탁기, 탈수기, 일체형 세탁·탈수건조기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kW 초과하거나 전기탈수기 드럼 속도가 50 m/s를 초과하는 기기 | | | | ○ | | | | | | |
| 4) 공기질 조절기기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실내 공기 또는 습도 조절을 위해 전동모터, 팬, 히터, 진동자 등을 이용하는 기기와 옥외설치형 공기정화장치 | | ○ | | | 1,288 (720) | 1,906 (840) | 2,501 (1,080) | 3,883 (1,560) | |

| 대상기자재 | | |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 | 제품구분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전자파강도 | 적합등록 | 자기적합확인 | 소형 단상 | 중형 단상 | 대형 단상 | 대형 3상 |
| 시험적용시 수수료 추가 - 소형 : 34 만원 - 중형 : 51 만원 - 대형 : 68 만원 - 대형3상 : 100 만원 ※ 수수료 밑의 ()는 EMI 대상일 경우 수수료 | |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공기청정기, 이온발생기(산소 이온 발생기), 가습기 및 제습기 (가열식, 초음파 및 복합식을 포함), 에어워셔, 오존 발생기, UV 공기청정기, 전기집진기, 전자식 마스크, 옥외설치형 공기정화장치 ○ 정격입력이 500 W를 초과하는 기기 | | | | | | | |
| | 5) 선풍기류 및 송풍기류 | ○ (정의) 전동모터 축에 날개를 달아 회전시키거나 압력 차이로 공기의 유동을 일으켜 일정 공간에 바람을 발생시키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선풍기, 에어서큘레이터, 송풍기, 환풍기, 레인지후드, 팬 코일 유닛 및 폐열 회수 환기장치, 전기냉풍기, 전기에어커튼 ○ 정격입력이 500 W를 초과하는 기기 | | ○ | | 1,288 (720) | 1,906 (840) | 2,501 (1,080) | 3,883 (1,560) |
| | 6) 냉·난방기류 ※ 에어컨 | ○ (정의) 냉매시스템(열교환펌프, 컴프레서 방식 포함)을 사용하여 주변 온도를 제어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에어컨디셔너, 냉·난방기, 창문형 에어컨, 공조시스템 | | ○ | | | | | |
| | 7) 전기냉·온수기류 및 정수기류 | ○ (정의) 수도관 연결 또는 물통의 물을 냉각기(컴프레서), 히터, 모터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가열, 냉각, 정수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냉·온수기(일체형 및 단독형 포함),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 전기냉수기, 순간온수기, 전기정수기(전기이온수기 포함), 탄산수제조기 | | ○ | | 1,906 (840) | | 2,501 (1,080) | 3,883 (1,560) |
| | 8) 전열기구류 ※ 난방가전 | ○ (정의) - 히터를 이용해 방사된 열로 난방을 하는 기기 또는 축열체의 전기적 에너지를 열로 저장한 후 방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 - 전기를 사용한 내부 발열체를 이용하여 특정 공간이나 사람 또는 동물 등의 신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열을 공급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스토브, 전열보드, 욕실난방기(전구모양 히터 포함), 전기라디에이터, 컨벡터, 전기온풍기, 전기난방기(축열식 포함), 보일러(전기보일러, 소형 전기보일러 등), 펠릿 | | ○ | | 1,288 (720) | 1,906 (840) | 2,501 (1,080) | 3,883 (1,560) |

| 대상기자재 | | |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 | 제품구분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전자과강도 | 적합등록 | 자 기 적 합 확 인 | 소형 단상 | 중형 단상 | 대형 단상 | 대형 3상 |
| | | 스토브(전열 소자를 이용하여 접화하는 방식에 한정), 전기난로(손·발보온기 포함), 전기냉·온수매트/침대, 전기햇팩(전기찜질기 포함), 온열의자, 전기온장고, 전기보온기 | | | | | | | |
| | 9) 전기매트류 ※ 전기매트/전기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사용자가 깔거나 덮고 사용하는 온열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요,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장판, 전기침대, 카본매트, 온열매트 | ○ | ○ | | 1,288 (720) | 1,906 (840) | 2,501 (1,080) | 3,883 (1,560) |
| | | | | | | 전자과강도수수료 : 472 | | | |
| | | ○ 직류전원 사용제품은 전자과강도 시험 제외 | | | | | | | |
| | 10) 해충퇴치기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전압을 사용하여 빛으로 유도한 해충을 감전시키는 기기 - 빛 또는 발열체를 이용하여 살충제를 확산시키거나 해충을 포획·퇴치할 수 있도록 만든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격살충기, 전기훈증살충기(모기, 해충 퇴치기), 전기포충기, 전기해충집진기, 해충퇴치 라이트 | | | ○ | | | | |
| | 11) 전동형스크린류 ※ 전동커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스크린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형 롤스크린(전동식 커튼, 셔터, 그릴, 차양, 블라인드) | | | ○ | 1,288 (720) | 1,906 (840) | 2,501 (1,080) | 3,883 (1,560) |
| | 12) 주방용 전열기기류 ※ 전기레인지/오븐/전기그릴/토스터기/에어프라이어/튀김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가열판, 복사열 및 대류열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거나 보온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오븐기(오븐레인지 포함), 전기호브, 전기그릴(휴대형 및 거치식 모두 포함), 전기곤로, 전기프라이팬, 전기고기구이, 와플기기, 핫플레이트, 전기토스터(팝업, 오븐 포함), 에어프라이어, 튀김기, 주방용 전열응용기기 | | | ○ | | | | |
| | | - 전기레인지(하이라이트, 하이브리드 포함) | | | ○ | 1,906 (1구) | 2,501 (2구이상) | | 3,883 |
| | 13) 주방용 전동기기류 ※ 믹서기/블렌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주방에서 전동모터를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기 및 재료(과일, 고기, 음료, 가루 등)를 가공(분리 또는 혼합)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서믹서기, 전기블렌더,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거품기(크림 거품기 포함), 전기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 | | ○ | 1,288 (720) | 1,906 (840) | 2,501 (1,080) | 3,883 (1,560) |

| 대상기자재 | | |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 | | 제품구분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전자파강도 | 적합등록 | 자기적합확인 | 소형 단상 | 중형 단상 | 대형 단상 | 대형 3상 |
| | | 전기칼·칼갈이, 전기장통따개, 전기분쇄기(원두 분쇄기 포함), 전기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제면기, 전기절단기(육절·폴질기), 주방용 전동용용기기 | | | | | | | |
| | | ○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kW를 초과하는 기기 | | | ○ | | | | |
| | | ○ 사용빈도가 적어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닭털털피기, 진공쌀통, 아이스크림/와인/소주 디스펜서 | | | | | | | |
| | 14) 주방용 전기 액체가열기기류 ※ 밥솥/전기포트/커피용품/전기쿠커/음료제조기/간식메이커 | ○ (정의) 히터 또는 증기로 액체 및 음식을 가열하거나 보온을 위해 사용되는 기기(압력 기능 포함)와 설정된 온도로 가열하는 주방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밥솥(보온밥솥 포함), 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포트(보온, 분유, 티포트, 멀티포트 포함), 전기약탕·중탕기, 커피메이커(캡슐 포함), 전기스팀쿠커(찜기), 달걀조리기, 우유가열기, 젓병가열기, 요구르트·청국장제조기, 제과·제빵기, 간식·이유식제조기, 증기조리기, 전기착유기, 전기용해기(와스, 초콜릿, 파라핀용), 전기주온기, 주방용 액체가열용용기기 | | | ○ | 1,288 (720) | 1,906 (840) | 2,501 (1,080) | 3,883 (1,560) |
| | | - 커피 머신(자동 머신) | | | ○ | 1,906 (840) | | 2,501 (1,080) | 3,883 (1,560) |
| | 15) 전자유도가열식 (IH) 조리기기류 | ○ (정의) 유도가열(Induction Heating) 방식의 주방용 전열기기와 전기액체 가열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IH 전기호브, IH 전기레인지(인덕션) 등 - IH 전기밥솥(보온밥솥 포함), IH 전기주전자, IH 전기냄비, IH 전기물끓이기, IH 전기약탕기, IH 커피메이커, IH 전기스팀쿠커, IH 달걀조리기, IH 우유가열기, IH 젓병가열기, IH 요구르트제조기 | ○ | ○ | | 1,906 (1구) | | 2,501 (2구이상) | 3,883 |
| | | | | | | 1,288 (720) | 1,906 (840) | 2,501 (1,080) | 3,883 (1,560) |
| | | 전자파강도수수료 : 472 | | | | | | | |
| | 16) 음식물 처리기기류 ※ 위생관리 | ○ (정의)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압축, 분쇄하거나 히터 등을 이용하여 건조하는 기기 (하수도법 허용 조건에 해당하는 기기로 한정)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음식물처리기, 주방용 오물분쇄기 | | | ○ | 1,288 (720) | 1,906 (840) | 2,501 (1,080) | 3,883 (1,560) |
| | 17) 이·미용기기류 | ○ (정의) 사람 또는 동물의 모발, 신체를 손질하거나 상태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머리손질기(헤어스타일러, 브러 | | | ○ | 1,288 (720) | 1,906 (840) | 2,501 (1,080) | 3,883 (1,560) |

| 대상기자재 | | |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 | 제품구분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전자파강도 | 자기적합확인 | 소형 단상 | 중형 단상 | 대형 단상 | 대형 3상 |
| | | 쉬 포함, 전기고데기(전기 머리인두 포함), 전기드라이기(머리, 손톱 포함), 전기두피·모발관리기(전기헤어캡 포함), 샴푸기기, 모발가습기, 손톱정리기, 전기면도기/전기이발기, 안면사우나기 및 피부마사지기, 제모기(전기·전동기, 레이저제모기 포함), 전동클렌저, 피부관리기(레이저미용기, 플라즈마 미용기, 롤링미용기기), 눈썹/네일관리기(전동눈썹정리기, 전동네일관리기, 네일드라이어), 적외선·자외선 등 피부관리기, 저주파·고주파 이·미용기기, 두피LED헬멧(두피개선헬멧), UV손톱경화기 | | | | | | |
| | | ○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사용빈도가 적어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피부관리기(전동클렌저, 미스트기, 피지관리기, 각질관리기, 피지 및 각질관리기), 히팅눈썹고데기, 편도결석흡입기, 귀지흡입기, 콧물흡입기, UV손톱경화기 | | | | | | |
| | 18) 전자유도가열식(IH) 가전기기류 | ○ (정의) 유도가열(Induction Heating) 방식의 가정용 전기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IH 가습기, IH 피부관리기 | | ○ | 1,288 (720) | 1,906 (840) | 2,501 (1,080) | 3,883 (1,560) |
| | 19) 전기세척기류 | ○ (정의) 발열체나 초음파를 이용하여 주방용 기구나 생활용품, 신체를 세척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세척기, 전기식기세척기, 가정용 초음파세척기(과일야채세척기), 틀니·안경세척기(살균 포함), 구강청결기(전동칫솔기, 구강세척(세정)기) ○ 전기(식기)세척기의 전동기 정격입력이 1 kW를 초과하는 기기 | | ○ | 1,288 (720) | 1,906 (840) | 2,501 (1,080) | 3,883 (1,560) |
| | 20) 전기건조기류 | ○ (정의) FAN, 전동모터, 히터, 냉각을 이용하여 신체,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전기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건조기, 회전형 전기건조기, 손건조기, 의류관리기, 식품건조기(살균 포함), 전기식기건조기, 신발 관리기, 동결건조기 ○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kW를 초과하는 기기 | | ○ | 1,288 (720) | 1,906 (840) | 2,501 (1,080) | 3,883 (1,560) |
| | 21) 전기다리미류 및 전기프레스기류 | ○ (정의) 전열 장치로 가열시킨 판을 이용하여 직물류를 다리는 기기(스팀 기능 포함)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다리미, 스팀다리미, 바지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 프레스기 | | ○ | | | | |

| 대상기자재 | | |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 | | 제품구분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전자파강도 | 적합등록 | 자기적합확인 | 소형단상 | 중형단상 | 대형단상 | 대형3상 |
| | 22) 전동재봉기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전기적 장치를 이용하여, 옷감, 천 등의 바느질, 오버로크, 자수 등을 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전동재봉기, 터프팅건 | | ○ | | | | | |
| | 23) 전동침대류 및 전기의자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침대나 의자(소파)의 높이 또는 기울기를 변화시키거나 온열할 수 있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침대, 전기의자(이발용의자, 각도조절의자 포함), 전동 소파(리클라이너) ○ 사용빈도가 적어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책상, 전동 밥솥장, 전동옷장 | | ○ | | 1,906 (840) | 2,501 (1,080) | 3,883 (1,560) | |
| | 24) 화장실용 전기기기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화장실에서 자동으로 세정하거나 건조를 할 수 있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비데(자동세정·건조식 포함), 전기변좌, 오물흡입기 | | ○ | | | | | |
| | 25) 유체펌프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기계적 수압을 발생시켜 액체 및 오수를 이동시키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모터 펌프 ○ 여과 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C 이하이고, 정격 입력이 1.5 kW 이하' 이외의 기기 ○ 다음의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공펌프, 에어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 | ○ | | 1,906 (840) | 2,501 (1,080) | 3,883 (1,560) | |
| | 26) 전자보관기 및 화폐교환기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전자적 방식으로 수하물을 보관하거나, 지폐나 동전을 교환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하물 보관기, 지폐 및 동전 교환기 | | ○ | | | | | |
| | 27) 헬스보조기기류 ※ 건강관리용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전기적 장치를 이용하여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헬스기구, 런닝머신, 워킹머신, 진동 운동 기구, 전동거꾸리 | | ○ | | 1,288 (720) | 1,906 (840) | 2,501 (1,080) | 3,883 (1,560) |
| | 28) 전기마사지기류 ※ 안마용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전기적 장치를 이용하여 마사지 기능을 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대상기자재 | | |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 | | 제품구분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전자파강도 | 적합등록 | 자기적합확인 | 소형단상 | 중형단상 | 대형단상 | 대형3상 |
| | | - 전기마사지기, 전기안마의자, 안마기 | | | | | | | |
| | 29) 전기사우나 기기류 ※ 냉온·찜질용품/족욕·좌훈용품 | o (정의) 내장된 전열 소자를 이용하여 스팀을 발생시키거나, 물을 데울 수 있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스팀사우나기기, 전기사우나기기, 사우나용 전열기기, 전기반신·전신욕기, 전기욕조(독립적인 기포발생기를 포함), 전기좌훈·욕기(족욕기 포함) | | ○ | | | | | |
| | 30) 게임기구류 및 오락기구류 | o (정의) 개인용 서비스 게임기구,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게임기구 및 오락기구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레이저사격기기,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인형뽑기, 전자 다트판, 농구게임기, 전기게임응용기기 - 애완용 오락기기, 무선기능이 없는 전동모터 장난감(드론, 자동차, 보트 등) o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기로서 전동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 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오락기구 | | ○ | | | | | |
| | 31) 전기 장난감류 | o (정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전기 장난감 (해당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기기는 다른 기자재 분류를 적용) o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기로서 전동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 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 | | ○ | | 1,288 (720) | 1,906 (840) | 2,501 (1,080) | 3,883 (1,560) |
| | 32) 생활가전기류 1)~31)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 | ○ | | 800 | 1,100 | 2,100 | |
| | 33) 동식물용 전기기기류 | o (정의) 전기 회로, 전동모터 등을 이용하여 동식물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히터(관상어용·식물용,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전기어항, 애완동물목욕기, 반려동물 대기공간함(고정형 캔넬), 어항 청소기 o 사용빈도가 적어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자동먹이급여기, 애완동물 발 세척기, 이동형 캔넬(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에 한함), 애완동물 배변 처리기, 동물용 UV살균브러쉬, 강아지 초음파/전격 짖음방지기 | | ○ | | 1,288 (720) | 1,906 (840) | 2,501 (1,080) | 3,883 (1,560) |
| | 34) 기타가정·상업용 전기기기 | ① 보플제거기 ② 기포발생기 | | ○ | | 1,288 (720) | 1,906 (840) | 2,501 (1,080) | 3,883 (1,560) |

| 대상기자재 | | |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 | | 제품구분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전자파강도 | 적합등록 | 자기적합확인 | 소형단상 | 중형단상 | 대형단상 | 대형3상 |
| | | ③ 전기분무기(교류전원 사용기기에 한함)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주거·상업용 페인트도장기, 스모그머신 | | | ○ | | | | |
| | | ④ 전기방향탈취기(교류전원 사용기기에 한함) ○ (정의) 전기적 장치를 이용하여 공기 중의 냄새를 제거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탈취/향기용 디퓨저, 방향·탈취제 확산기 | | | ○ | | | | |
| | | ⑤ 전기소독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주거·상업용 살균방역기, 방역케이트, 수영장용 자외선살균기, 의료폐기물살균기, 칫솔살균기, 젖병 소독기 | | | ○ | | | | |
| | | ⑥ 물수건제조기(포장기 포함) | | | ○ | | | | |
| | | ⑦ 과일껍질짜기 | | | ○ | | | | |
| | | ⑧ 감자탈피기 | | | ○ | | | | |
| | | ⑨ 전기정미기 | | | ○ | | | | |
| | | ⑩ 전기빵자르개 | | | ○ | | | | |
| | | ⑪ 전기주류숙성기 | | | ○ | | | | |
| | | ⑫ 전기시계 | | | ○ | | | | |
| | | ⑬ 컴프레서 | | | ○ | | | | |
| | | ⑭ 전기분수기 | | | ○ | | | | |
| | | ⑮ 수도동결방지 | | | ○ | | | | |
| | | ⑯ 식물재배기 ○ (정의) 모터, 빛(LED 포함) 또는 열을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기기 | | | ○ | | | | |
| | | ⑰ 전기작동 도어록(디지털 도어록) | | | ○ | 1,912 | 2,806 | 6,475 | |
| | | 35) 생활 가전기기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경공업, 농업, 산업 환경(차목.1) 제외)에서 사용하는 기기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 ○ 범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기 - 손 소독기 등 전기분무기, 전기방향탈취기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 정격입력이 10 kW를 초과하는 기자재 | | | | | | | |
| 다. 전기·전동 공구류 : 전동모터 또는 | 1) 전동공구류 | ○ (정의)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재료를 가공, 연마, 절단, 고정, 변형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기 | | | ○ | 1,288 (720) | 1,906 (840) | 2,501 (1,080) | 3,883 (1,560) |

| 대상기자재 | | |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 | | 제품구분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전자파강도 | 적합등록 | 자기적합확인 | 소형단상 | 중형단상 | 대형단상 | 대형3상 | |
| 가열기능을 이용하여 동작하는 공구나 기기 ※ 방사내성(RS) 시험적용시 수수료 추가 - 소형 : 34 만원 - 중형 : 51 만원 - 대형 : 68 만원 - 대형3상 : 100 만원 ※ 수수료 밑의 ()는 EMI 대상일 경우 수수료 | |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 샌더, 전기 그라인더, 전기 톱, 드릴 연마기, 트리밍기, 테이블톱, 직소/컷소, 전기대패, 절삭 및 연마 공구, 전동 못총, 전동드릴(드라이버), 전동 임팩트 드릴, 전동 커터, 전동 렌치, 전동 예초기, 전기 잔디깎이, 전기 가위, 전기해머, 폴리셔, 전기테이퍼, 전기진동기, 이와 유사한 전동공구 | | | | | | | | |
| | | ○ 정격입력이 1.5 kW를 초과하거나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 | ○ | 800 | 1,100 | 2,100 | | |
| | | ○ 배터리 착탈식 전동공구 | | | ○ | | | | | |
| | | ○ 산업현장 전용으로 사용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도관굽힘기, 철근결속기, 볼트압축기, 콘크리트바이브레이터, 전동경작기, 가축사료파쇄기 등 건설장비류 | | | | | | | | |
| | | 2) 전기가열공구류 (전기가열기기) | ○ (정의) 전기 회로로 열을 발생시키는 공구나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납땀인두, 납땀제거인두, 권총형 납땀기, 열가소성도관용접기, 필름접착기, 플라스틱절단기, 페인트제거기, 가열총, 전기조각기, 열풍수축기 | | | ○ | 1,288 (720) | 1,906 (840) | 2,501 (1,080) | 3,883 (1,560) |
| 3) 전기용접기류 | ○ (정의) 전기 회로를 이용하여 물체를 접착하거나 절단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아크용접기, 총형아크접착기, 플라즈마용접기, 플라즈마절단기 | | | ○ | 2,755 | 3,557 | 5,347 | | | |
| 4) 전기·전동 공구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기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 정격입력이 10 kW(전기용접기류는 10 kVA)를 초과하는 기자재 | | | | | | | | | | |
| 라. 조명기기류 : 조명을 사용하여 주변 경관, 물체 또는 그 주변을 보이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에 한정하며, 조명을 위한 독립 장치 및 그러한 장치 또는 장치의 조립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모듈도 포함 | 1) 형광등기구류 | ○ (정의) 전자식 안정기 및 자기식 안정기(초크 코일 및 글로우 스타터 등)를 사용하는 형광등기구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식 형광등기구, 자기식 형광등기구 | | | ○ | 1,329 (600) | 2,098 (700) | 2,764 (900) | 4,256 (1,300) | |
| | 2) LED등기구류 | ○ (정의) 1 kV 이하에서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조명기구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LED등기구, LED 투광조명기구, LED조명시스템, LED 경관조명기구, LED 보안등기구, LED 가로등기구, 등명기(육상용) | | | ○ | | | | | |

| 대상기자재 | | |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 | | 제품구분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전자파강도 | 적합등록 | 자기적합확인 | 소형단상 | 중형단상 | 대형단상 | 대형3상 | |
| : 실내·외, 이동, 고정, 매입, 매설, 특수용도, 전원공급장치(컨버터, 안정기 등) 내·외장 등 사용 장소 또는 목적, 형태와 무관하게 조명용도의 기자재에 한정 | 3) 일반등기구류 |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백열등기구·전기스텐드·상들리에 (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할로겐등기구 (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고압방전등기구, 일반 투광조명기구, 일반 경관조명기구, 일반 보안등기구, 일반 가로등기구 | | | ○ | | | | | |
| | | o 할로겐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 조명기구 중 150 W를 초과하는 기기 | | | ○ | | | | | |
| | 4) 안정기, 컨버터 및 램프 제어장치 |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자기식 안정기, 전자식 안정기 (일반 램프용),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 | | ○ | | | | | |
| | | o 램프용 자기식·전자식 안정기의 정격입력이 1 kW를 초과하는 기기 | | | ○ | | | | | |
| | 5) 램프류 |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안정기 또는 컨버터 내장형 램프 | | | ○ | | | | | |
| | 6) 기타 조명기구 | ① 체인형 조명기구 | | | ○ | | | | | |
| | | ② 조광기(디밍) | | | ○ | | | | | |
| | | | o 직류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 | | | | | | |
| | 7) 조명기구류 1)~5)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 | | ○ | 800 | 1,100 | 2,100 | | |
| | 8) 조명기구류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o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기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 조명 밝기·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 | | | | | | | | |
| 마.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류 : 전기전자회로를 내장한 교류 1 kV 이하 또는 직류 1.5 kV 이하의 정격 전압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한함 | 1) 스위치류 |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식 스위치, 전자식 온도조절기 | | | ○ | | | | | |
| | 2) 차단기류 |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식 차단기, 누전차단기 | | | ○ | 1,958 | 2,755 | 3,557 | 5,347 | |
| | 3) 접촉기 및 모터 기동기류 |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자 접촉기 및 개폐기, 저압 모터 기동기 | | | ○ | | | | | |
| | ※ 제품의 주기능(필수기능)이 다른 규정에 명확히 분류되어 있는 기기는 제외 | | | | | | | | | |
| 바. 멀티미디어기기류 : 정보기기, 오디오·비디오기기, 방송수신 기기 및 엔터테인먼트기기 또는 이들이 조합된 기기 | 1) 정보기기류 : 제품의 주기능(필수기능)이 데이터 또는 통신 메시지의 입력, 저장, 출력(표시), 검색, 전송, 처리, 스위칭, 제어 중 어느 하나(또는 이들의 조합)의 기능을 가지거나, 정보의 전송을 위한 하나 이상의 포트를 갖춘 기기 | ① 컴퓨터 및 컴퓨터 시스템 o (정의) 중앙처리장치를 가진 전자 컴퓨터로, 일반적으로 합체, 마더보드, 전원공급기, 주변기기 및 내장구성품 등으로 구성되는 기기 | | | ○ | | | | | |
| | |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슈퍼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서버, 데스크탑, 노트북(랩탑), 태블릿, Box PC, Stick PC | | | | 1,958 | 2,755 | 3,557 | 5,347 | |
| | | ② 컴퓨터 주변장치 o (정의)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에 데이터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시스템의 입/출력 장치로서, 주변장치는 컴퓨터 외부에 연결되는 모든 | | | ○ | | | | | |

| 대상기자재 | | |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 | 제품구분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전 자 파 장 도 | 적 합 등 록 | 자 기 적 합 확 인 | 소형 단상 | 중형 단상 | 대형 단상 | 대형 3상 |
| | | <p>장치, 유선(또는 케이블)으로 컴퓨터를 외부 장치에 연결하는 컴퓨터 내부의 모든 장치, 내부 또는 외부에 교체할 수 있게 장착되는 모든 회로 기관이 해당하며, 저장장치, 입·출력장치, 내장구성품 등이 해당</p> <p>○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장치 :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USB 메모리, 광학디스크드라이브(ODD), 디스크장치, 네트워크부착저장장치(NAS) - 입·출력장치 : 디스플레이기기, 모니터, 프로젝터, 프린터(복합기 포함), 마우스, 키보드, 조이스틱, 터치패드, 스캐너, 도킹스테이션, 허브, USB(라이트닝)형 이어폰·헤드셋 - 컴퓨터 내장구성품 : 메인보드, 입·출력카드, 전원공급기, 컨트롤러장치, 비디오카드, LAN 카드 | | | | | | | |
| | | <p>③ 정보기술 단말장치</p> <p>○ (정의) 독립적인 정보처리 기능을 수행하며, 네트워크나 유선 등으로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되거나,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기기</p> <p>○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스플레이 컨트롤 단말기, POS 단말기, 바코드 스캐너, 전자계산용 단말기, 복사기(복합기 포함), 멀티카드리더기 | | ○ | | | | | |
| | | <p>④ 측정·검사·계측용 기기 (바목.1) 정보기기류 정의를 포함하는 것에 한함)</p> | | | ○ | | | | |
| | 2) 방송수신기기류 | <p>○ (정의) 지상파 방송, 위성 방송, 케이블 방송을 포함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서비스를 수신할 목적으로 튜너 기능이 내장된 기기</p> <p>○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수신기, 라디오 수신기, 위성방송수신기, 방송수신튜너, DMB 수신기 | | ○ | | 3,773 | 4,692 | 6,492 | |
| | 3) 오디오기기류 | <p>○ (정의) 오디오(음성 포함) 신호의 발생, 입력, 저장, 재생, 검색, 송신, 수신, 증폭, 처리, 스위칭(전환) 또는 제어(또는 이들의 조합)를 주기적으로 하는 기기</p> <p>○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앰프내장형 스피커, 오디오 증폭기(앰프), 오디오 레코더, 디지털 | | ○ | | 1,958 | 2,755 | 3,557 | 5,347 |

| 대상기자재 | | |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 | 제품구분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전자파강도 | 자기적합확인 | 소형 단상 | 중형 단상 | 대형 단상 | 대형 3상 |
| | | 음성플레이어, 헤드셋(신호변환 또는 증폭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함), 디지털오디오워크스테이션(DTM), 전자악기, 오디오시스템(홈시어터 포함), 오디오 조절기(이퀄라이저 포함) | | | | | | |
| | | - 오디오리시버 | | | 3,418 | 4,337 | 6,101 | |
| | | o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마이크 | | | | | | |
| | 4) 비디오기기류 | o (정의) 비디오(영상) 신호의 발생, 입력, 저장, 재생, 검색, 송신, 수신, 증폭, 처리, 스위칭(전환) 또는 제어(또는 이들의 조합)를 주기능으로 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카메라(캠코더 포함), 웹카메라(액션캠 포함), CCTV 카메라, 비디오 플레이어, 비디오 폰, 포토 프레임, 비디오 레코더 | | ○ | | | | |
| | 5) 멀티미디어 조합 및 응용기기류 | o (정의) 정보기기, 오디오기기, 비디오기기, 방송수신기 등 둘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되거나, 이를 응용한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사전, e-북리더기, 전자번역기, 전자계산기, 전자시계(복합기능에 한함), 전자학습기, 전자게임콘솔기, 전자게임 주변기기, 전자게임패드, AI스피커, 스마트워치(밴드 포함), 스마트안경(글래스), VR 고글(VR 게임기 포함), 스캔 컨버터, 전자칠판(전자보드 포함) | | ○ | 1,958 | 2,755 | 3,557 | 5,347 |
| | 6) 엔터테인먼트 기기류 | o (정의) 극장, 방송국 또는 공연장에서 청각적 또는 시각적으로 예술적 효과를 창출하는 목적의 제어 및 조합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무대 조명 제어기, DMX(Digital Multiplex) 제어기, 마이크 시스템, 방송용 카메라 | | ○ | | | | |
| | | 7) 멀티미디어기기류의 1) ③, 2) ~ 6)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 ○ | 1,958 | 2,755 | 3,557 | 5,347 |
| | | 8)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o 정격입력이 교류 1,000 V 또는 직류 1,500 V를 초과하는 기기 o 범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o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기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 단순 시계 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o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기기(크리스마스 카드, 생일 축하 초 등) o 별도의 전원이 없이 1대 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엑세서리 | | | | | | |
| 사. 디지털기기류 | 1) 일반 환경 | ① 사무용 및 업무용 기기 | | ○ | 1,958 | 2,755 | 3,557 | 5,347 |

| 대상기자재 | | |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 | | 제품구분 |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전자파강도 | 적합등록 | 자기적합확인 | 소형단상 | 중형단상 | 대형단상 | 대형3상 | | |
| : 9 kHz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거나,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계산, 작업, 변환, 녹음, 파일링, 분류, 저장, 검색 또는 전송과 같은 데이터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또는 시스템으로 멀티미디어기기와 무선 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기 | 사용 기기 : 디지털기기로, 일반 상용(220 VAC) 전원의 전력을 공급 받기 위해 직접 연결되거나, 연결을 목적으로 사용된 직류 전원에 연결되는 기기와 배터리 구동 기기 | o (정의) 디지털기기류의 정의에 해당하는 전기·전자기기로, 일반 사무 및 업무 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 | | | | | | | | | |
| | |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코팅기, 문서세단기, 천공기, 전동 타자기, 재단기, 제본기, 번호표 발행기, 교통카드충전기, 금전등록기, 지폐계수기, 전자저울, 자동 캔시머, 레이저마킹코딩기, 레이저각인기 | | | | | | | | | |
| | | o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핸드폰자동터치기, 전자금고, MPPT태양광컨트롤러, 자동 테이프 디스펜서, 전기소자기 | | | | | | | | | |
| | | ② 자판기(자동판매기) | | | ○ | | | | | | |
| | | ③ 투영기(슬라이드 투영기, 필름 스트립투영기, OHP, 필름 투영기) | | | | ○ | | | | | |
| | | ④ 신호변환 접속기 | | | | | | | | | |
| | | o (정의) 내부 회로를 이용하여 신호의 처리 및 변환을 하는 기기 | | | | | | | | | |
| | |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RS 232 변환기, USB 변환기, LAN 분배기, 멀티포트 변환기, USB 허브, 비디오 변환기(RGB, DVI, HDMI, DP 등) | | | | ○ | | | | | |
| | | ⑤ 주차차단기(시스템 포함) | | | | | ○ | 1,958 | 2,755 | 3,557 | 5,347 |
| | | ⑥ 휴대용 자동차 진단기 | | | | | ○ | | | | |
| | | ⑦ 태양광발전용 전력변환기(10 kVA 이하) | | | | | ○ | | | | |
| | | ⑧ 절연 변압기(전압조정기, 가정용 소형변압기, 교류 어댑터) | | | | | ○ | | | | |
| ⑨ 이동형 또는 고정형 로봇기기 | | | | | ○ | | | | | | |
| ⑩ 자동차의 운행 안전기능과 관련이 없는 자동차 내장형 전동기기 또는 디지털 제어기기 | | | | | ○ | | | | | | |
|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AV 시스템, 내비게이션, HUD | | | | | | | | | | | |
| ⑪ 일반 환경 사용기기 ①, ②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 | | | ○ | 800 | 1,100 | 2,100 | | | |
| ⑫ 일반 환경 사용기기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o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컨 등) o 카메라 렌즈 o 별도의 전원이 없이 1대 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액세서리 o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기 -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 | | | | | | | | | | | |

| 대상기자재 | | |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 | | 제품구분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전자파강도 | 적합등록 | 자기적합확인 | 소형 단상 | 중형 단상 | 대형 단상 | 대형 3상 | |
| | | 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 일반 환경의 대표적인 지역은 다음과 같다. o 주거지역 : 주택 및 아파트 등 o 상업지역 : 상점, 슈퍼마켓, 사무실, 은행, 공연(극)장, 음식점, 주유소, 주차장, 오락실, 스포츠센터 등 o 경공업지역 : 작업장, 실험실, 서비스센터 등 | | | | | | | | |
| | 2) 고전압 설비 및 부속기기류 | o (정의) 디지털기기로서, 설비에 사용되는 전원이 상용 전원이 아닌 중·고전압 변압기에서 공급되는 별도의 전력망을 사용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정전압 공급기(Automotive Voltage Regulator), 전압/주파수 제어기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 | | ○ | 1,958 | 2,755 | 3,557 | 5,347 | |
| | 3) 가변속 전력구동기기류 | o (정의) 저압 배전망(정격전압 1 kV 이하)을 이용하여 전동기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구동기기 o 고압 배전망(정격전압 1 kV 초과) 또는 특수전원을 이용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 | | ○ | | | | | |
| | 4) 무정전 전원장치 및 에너지 저장 장치 | ① 무정전 전원장치 및 전원 제어 시스템 | | | ○ | | | | | |
| ②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제어 시스템 | | | | ○ | | 2,755 | | 5,347 | | |
| ③ 무정전 전원장치 및 에너지 저장 장치의 정격 용량이 10 kVA를 초과하는 기기 | | | | ○ | | | | | | |
| | 5) 전원공급장치 | ① 직류전원공급장치 | | | ○ | 가정용 1,718 2,518 3,317 5,107 산업용 2,350 3,306 4,268 6,416 | | | | |
| | | | | | ○ | 4,285 (전자파 + 무선) | | | | |
| | | ② 전원공급용 인버터 | o (정의) 교류 또는 직류 입력을 특정 주파수를 갖는 교류 출력으로 전환하여 주는 전원공급장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교류출력 파워뱅크, 인버터 전원공급장치 | | | ○ | 2,755 | | 5,347 | |
| | | ③ 전기차 유선 충전기 | o (정의) 전기차 충전을 목적으로 직류 또는 교류 출력을 사용하는 완 | | | ○ | 1. 일체형 충전기 - 단상 11kW이하 : 3,557 | | | |

| 대상기자재 | | |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 | 제품구분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전자파강도 | 자기적합등록 | 소형 단상 | 중형 단상 | 대형 단상 | 대형 3상 |
| | | 속/급속 충전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차 유선 충전기 | | | - 3상 100kW 미만 : 5,347 2분리형 충전시스템 및 전원부 - 3상 100 kW ~ 200 kW : 7,961 - 3상 200 kW 이상 : 10,574 | | | |
| | | ④ 출력전압이 50 V를 초과하는 배터리 충전기 | | ○ | 1,718 | 2,518 | 3,317 | 5,107 |
| | |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범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설비에 내장되어 사용되는 구성품 또는 부품 ○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파워뱅크(직류입출력) 포함) ○ 승강압케이블류(시거잭, 직류입출력 컨버터) | | | | | | |
| | |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격입력이 교류 1,000 V 또는 직류 1,500 V를 초과하는 기기 ○ 일반 범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 | | | | | |
| 아.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 :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이동 목적으로 하는 기기 및 관련 부품 | 1) 전기자전거 | ○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정의에 해당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자전거 | | ○ | - | - | - | - |
| | 2) 이동용 전동기기류 | ○ (정의)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여 사람의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전동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동보드(전동킥보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와 유사한 이동용 전동기기 | | ○ | 3,106 | 4,901 | 6,283 | |
| | | ○ 배터리 교환형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 정격입력이 10 kW를 초과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 | ○ | 1,692 | 2,328 | 3,312 | |
| | 3) 이동용 전동기기 단위 부품류 | ○ (정의) 이동용 전동기기에 사용되는 각종 단위 완제품 및 전자회로 내장구성품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이동용 전동기기의 운행과 관련된 전기·전자 단위부품 ○ 이동용 전동기기 또는 전기자전거에 포함되어 적합성평가를 받은 단위 부품류는 적합성평가를 받을 필요 없음 | | ○ | 1,958 | 2,755 | 3,557 | 5,347 |
| 자. 타법 규정 기자재류 : 타 법령에서 전자파적합성 대상 기자재를 규정한 기자재류 | 1) 자동차 및 자동차 전장품류 | ① 자동차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 자동차(이륜, 삼륜 사륜 등), 내연기관 자동차 ② 자동차 전장품 ○ (정의) 전기적인 연결과 배선으로 연결되어 하나 이상의 특별한 기능 | | ○ | - | - | - | - |
| | | | | ○ | 3,072 | - | - | - |

| 대상기자재 | | |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 | | 제품구분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전자파강도 | 적합등록 | 자기적합확인 | 소형단상 | 중형단상 | 대형단상 | 대형3상 |
|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자과적합성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전기·전자장치 단위부품) | 을 수행하며 자동차를 구성하는 전기·전자장치로, 자동차 운행시 운전자, 보행자 및 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기기 - 자동차의 직접 제어와 관련된 기능 - 운전자, 승객, 기타 도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기능 - 전자과장해 발생 시 운전자나 기타 도로 보행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기능 - 자동차의 데이터 전송 시스템과 관련된 기능 - 전자과장해 발생 시 자동차의 법정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차량용 블랙박스(ADAS 기능이 있는 제품), 디지털록핏, OBD(On board diagnostics), 전자제어장치(ECU),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LiDAR, 램프(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 안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차량 탑재형 기기는 다른 기자재 분류를 적용 | | | | | | | |
| | | ③ 전자식 운행 기록계 ○ (정의) 자동차의 법정 데이터 기록 장치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식 운행기록계 | | | ○ | | | | |
| | 2) 전기철도기기류 : 「철도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기기 | ① 철도 열차 및 완성 차량 ○ (정의)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동력차, 부수 차량, 간선 차량, 도시 철도차량, 트램 | | | ○ | | | | |
| | | ② 철도차량 내 기기 ○ (정의) 철도차량에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전기 및 전자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견인 변환기, 견인 모터, 출입문 제어기, 제동 제어 시스템, 횡선 표시기, 정보 안내기 | | | ○ | - | - | - | - |
| | | ③ 철도 신호 및 전기 통신기기 | | | ○ | | | | |

| 대상기자재 | | |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 | 제품구분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전자파강도 | 자기적합등록 | 소형 단상 | 중형 단상 | 대형 단상 | 대형 3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철도 환경에 설치된 신호 및 전기통신 장치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신호 제어장치, 철도 신호 변환기, 철도 신호 감시 장치 ④ 철도 고정전원 설비 및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철도 고정 설비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전기 및 전자기기와 시스템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칭 스테이션, 전력 단권변압기, 부스터 트랜스, 변전소 개폐기, 철도 변전소 <p>※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대상기자재로 전자파적합성 시험한 기기는 대상에서 제외</p> | | | | | | | |
| | 3) 승강기기류 :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시키는 기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검사에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하는 기기에 한함 | ① 엘리베이터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 장치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출장치, 조작반, 주제어반, 도어 개폐장치, 감시 및 원격정보 시스템, 권상기, 비상통화장치, 안전센서, 메인 인버터 (속도 제어용) | | | | | | | |
| | | ② 엘리베이터카 전기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엘리베이터카에 장착되는 기기로 엘리베이터 안전 부품을 제외한 엘리베이터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전자 장치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청정기, 카 모니터, 승강기용 에어컨 ※ 안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단순 부착 기기는 다른 기자재 분류를 적용 | | | - | - | - | - | |
| | | ③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 장치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작반, 주제어반, 권상기, 감시시스템, 무빙워크 제어반, 에스컬레이터 제어반 | | | | | | | |
| | | ④ 승강기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강기 유지관리용 | | | | | | | |

| 대상기자재 | | |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 | 제품구분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전자파강도 | 적합등록 | 자기적합확인 | 소형 단상 | 중형 단상 | 대형 단상 | 대형 3상 |
| | | 부품으로 전기전자회로를 내장한 구성품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승강장 호출버튼, 인디케이터, 도어 인버터, 위치 표시기, 스크린 도어, 휠체어 리프트, 휠체어 리프트 제어반 | | | | | | | |
| | 4) 소방용품기기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 승인 또는 성능 인증 대상 기기 | ① 소방기기 ○ (정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한 소방기기로 전기전자회로를 내장한 제품 및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자동소화장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자동폐쇄장치,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플램댐퍼 | | ○ | | 1,958 | 2,755 | 3,557 | 5,347 |
| | | ② 소방용 조명기기 ○ (정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한 소방용 조명기기로 전기전자회로를 내장한 제품 및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유도등, 비상조명등, 기타 소방용 조명기기 | | ○ | | 1,329 (720) | 2,098 (840) | 2,764 (1,080) | 4,256 (1,560) |
| 차. 기타 특수조건의 기자재 | | 1) 가목, 나목, 바목, 사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주문·제작 방식으로 생산되고 기자재의 단면 최대 길이가 4 m를 초과하거나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대형기자재 | | ○ | ○ | 5,347 | | | |
| | | 2) 가목, 나목, 바목, 사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주문·제작 방식으로 생산되고, 기자재의 단면 최대 길이가 2 m를 초과하며 무게가 250 kg을 초과하는 융복합 멀티미디어기기류 | | ○ | ○ | 5,347 | | | |
| | | 3)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바목, 사목, 4), 사목, 5)의 기자재 중 산업용(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으로 사용되는 기자재 | | | ○ | 1,958 | 2,755 | 3,557 | 5,347 |
| | | 4)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특수조건의 기자재 | | | ○ | 1,958 | 2,755 | 3,557 | 5,347 |
| | | ※ 1), 2)의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에 따라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적용 | | | | | | | |
| ※ 비 고 1.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다.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기기 -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인증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 | | | | | | | | |

| 대상기자재 | | |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 | | 제품구분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전 자 파 강 도 | 적 합 등 록 | 자 기 적 합 확 인 | 소형 단상 | 중형 단상 | 대형 단상 | 대형 3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p>2. 카목 1) 또는 2)의 기자재는 완성품 대신에 기구물(외부 구조물, 내부 구조물 등)을 제외한 구성품들을 별도로 조합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할 수 있으며,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받은 구성품은 시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시험성적서에는 시험에서 제외한 구성품 목록 및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p> <p>3. 대표적인 품목은 적용 대상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대상 명칭을 나열한 것으로, 대표적인 품목 외에도 기자재별 정의에 부합되고, 대표적인 품목과 기능, 동작 방식, 사용형태, 사용환경 등이 같으면 적합성 평가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p> | | | | | | | | | |

※ 시험 항목별 기본수수료

(단위 : 원)

| 시험 항목 | 제품구분 | | | | |
|---------------|------------------|------------------|------------------|------------------|------------------|
| | 휴대용기기 | 소형기기 | 중형기기 | 대형기기 | 대형3상기기 |
| 방사장해 | 528,000 | 528,000 | 672,000 | 816,000 | 1,104,000 |
| 전도장해 | NA | 192,000 | 288,000 | 384,000 | 576,000 |
| 정전기 방전내성 | 96,000 | 96,000 | 144,000 | 192,000 | 288,000 |
| 전자파 방사내성 | 408,000 | 408,000 | 612,000 | 816,000 | 1,224,000 |
| 전기적빠른 과도현상내성 | NA | 96,000 | 144,000 | 192,000 | 288,000 |
| 서지내성 | NA | 230,400 | 345,600 | 460,800 | 691,000 |
| 전자파 전도내성 | NA | 192,000 | 288,000 | 384,000 | 576,000 |
| 전압강하 및 순시정전내성 | NA | 96,000 | 144,000 | 192,000 | 480,000 |
| 국립전과연구원 신청비용 | 120,000 | 120,000 | 120,000 | 120,000 | 120,000 |
| 합계 | 1,152,000 | 1,958,400 | 2,757,600 | 3,556,800 | 4,656,000 |

Note) 적합성평가 출장시험

1. 근거 : 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공고 제2018-29호
2. 시험수수료 : 해당 제품군 수수료 적용(출장비 별도, 별첨참고)

※ 비 고

- 가. 시험해당 없는 단순변경 신청 시(타 시험소 기 등록건 포함) : 100,000(원)
- 나. 기술기준변경(시험진행) 신청 시 : 해당 시험 수수료 + 100,000원
- 다. 파생모델 등록 기준 : 모델 30개 초과 시 1모델당 1,000(원) 추가
- 라. 적합등록 필증 해지 : 10,000(원)
- 마. 제조자 명칭등의 수정으로 성적서 재발행 : 400,000원
- 바.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시
 - 적합인증 : 300,000원
 - 적합등록 : 200,000원
- 사. 수수료 할인 : 접수시점기준으로 5건 이상 접수시 전체시험수료의 10% 할인 적용

□ 무선기술기준 대상기자재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기능이 포함된 제품)

1. 무선-성능 시험수수료

(단위 : 천원)

| 기자재명칭 (품목) | 기본수수료 | 비고 |
|---|-------|--|
|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이동국) | 2,160 | 1. 기종 또는 방식이 2이상인 복합무선 기기의 경우에는 당해 기기마다의 수수료를 합산 2. 복수의 시험모드가 요구되는 기기는 기본시험 비용의 50% 추가 적용 (단, 3개 이상 다량의 시험모드가 적용되는 경우 시험비용의 20~50% 내에서 협의) 3. KC 무선인증 업무처리비용의 적용 * 시험모드 추가에 따른 수수료 산출 시에 해당 비용은 제외하여 계산 하며, 산출된 금액에 업무처리비용을 더하여 적용 * 해당 수수료는 서류검토 및 전반적인 인증 진행 업무처리에 대한 비용이며, 인증신청 비용 및 면허세는 별도임. |
|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이동국) | 1,440 | |
|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이동국) | 2,160 | |
| IMT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이동국) | 1,800 | |
|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 | 2,160 | |
|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 5,160 | |
|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 2,208 | |
| 자계유도식무선기기 | 1,440 | |
| 특정소출력 무선설비 (무선조정용 / 데이터전송용 / 안전시스템용) | 1,440 | |
| 특정소출력 무선설비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 1,440 | |
| 특정소출력 무선설비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 1,260 | |
| 특정소출력 무선설비 (중계용) | 1,800 | |
| 특정소출력 무선설비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2,160 | |
| 특정소출력 무선설비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WLAN/BT 외) | 1,440 | |
| 특정소출력 무선설비의 기기 (이동체식별용) | 1,440 | |
| RFID/USN용 무선기기 | 1,800 | |
| 코드없는 전화기 | 1,440 | |
|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 3,600 | |
|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 1,296 | |
|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이동국) | 1,440 | |
|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1,680 | |
| DFS (Dynamic Frequency Selection) | 960 | |
| USIM 이동성 확인시험 | 480 | |
| 무선시험 샘플 및 사전시험 지원(중국시험소) | 600 | |
| KC 무선인증 업무처리비용 (인증비용 및 면허세 제외) | 300 | |

2. 무선-EMC 시험수수료

(단위 : 천원)

| 제품구분 | 기본수수료 | 비고 |
|------------------------|-------|--|
| 소형기기 ^(주1) | 1,440 | ^(주1) 소형기기 : 20kg 이하의 제품으로 1~2인이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주2) 중/대형기기 : 20kg 이상의 제품으로 2인 이상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
| 중/대형기기 ^(주2) | 2,400 | |

(추가 수수료)

가. 시험모드가 2개 이상일 경우의 시험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text{시험수수료} = \text{기본수수료} + \text{기본수수료의 } 50\% + \dots\dots$$

나. 시험 모드별 적용 예시

- 1) WLAN b/g/n(HT20,HT40) → 시험모드 1개 (2.4GHz 대역)
- 2) WLAN a/n(HT20,HT40) → 시험모드 3개(5 GHz 대역)
- 3) Bluetooth → 시험모드 1개
- 4) 휴대폰 → 시험모드 6개(음성통화/BT/WLAN/mega Camera/MP3 or MP4/USB link)

▣ CB/MRA 성적서 전환, 등록 수수료

(단위 : 천원)

| 신청 구분 (Application) | REVIEW FEE for EMC |
|---------------------------|--------------------|
| CB Report | 800 |
| FTA-MRA Report & 자기시험 성적서 | 700 |

Note) It takes about **2 weeks** for the review and **1 week** for registration..

▣ 유선기술기준 대상기자재

| 제품구분 | 기본수수료 | 비 고 |
|---------------------|-----------|-----|
|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처리기기 | 400,000 원 | - |

■ FCC/IC 시험 수수료

1. 무선 분야

(단위 : 천원)

| 시험항목 | 기본수수료 | 비고 |
|--|-------|---|
| FCC Part 15C / RSS-210 (Low Power Device) | 2,400 | 1. 기종 또는 방식이 2 이상인 복합 무선기기의 경우에는 당해 기기마다의 수수료를 합산 |
| FCC Part 15.247 / RSS-247 (BT, Wi-Fi) | 3,000 | 2. 복수의 시험모드가 요구되는 기기는 기본시험 비용의 50% 추가 적용 (단, 3개 이상 다량의 시험모드가 적용되는 경우 시험비용의 20~50% 내에서 협의) 3. TCB 인증수수료는 별도 |

2. 전자파 분야

(단위 : 천원)

| 시험 항목 | 제품구분 | | |
|-------|-------|-------|-----------|
| | 소형기기 | 중형기기 | 대형 및 3상기기 |
| 기본수수료 | 1,100 | 1,510 | 2,820 |

[별첨] 국내 출장비 산출표

| EMC평가센터 국내 출장비 산출표 | | | | | | | | | | | |
|--------------------|----------------|---------|-----|------------|---------|-----|------------|---------|-----|------------|---------|
| no. | 지역 | 출장비 | no. | 지역 | 출장비 | no. | 지역 | 출장비 | no. | 지역 | 출장비 |
| 1 | 강릉 | 492,000 | 31 | 보은 | 471,000 | 61 | 옥천 | 472,000 | 91 | 홍성 | 452,000 |
| 2 | 강진 | 536,000 | 32 | 봉화(영주) | 490,000 | 62 | 완주 | 493,000 | 92 | 화순 | 522,000 |
| 3 | 경산(청도) | 520,000 | 33 | 부산 | 561,000 | 63 | 울산 | 531,000 | 93 | 화천 | 476,000 |
| 4 | 경주 | 535,000 | 34 | 부안 | 489,000 | 64 | 울진(영양) | 524,000 | 94 | 거제 | 546,000 |
| 5 | 계룡 | 477,000 | 35 | 부여 | 475,000 | 65 | 원주 | 455,000 | 95 | 근거리(서울/경기) | 339,000 |
| 6 | 고령 | 514,000 | 36 | 사천 | 531,000 | 66 | 음성 | 454,000 | | | |
| 7 | 경남 고성 | 535,000 | 37 | 산청 | 511,000 | 67 | 익산 | 481,000 | | | |
| 8 | 고흥 | 550,000 | 38 | 삼척 | 507,000 | 68 | 인제 | 478,000 | | | |
| 9 | 공주 | 463,000 | 39 | 상주 | 484,000 | 69 | 임실(진안, 함양) | 505,000 | | | |
| 10 | 광양 | 536,000 | 40 | 서산 | 445,000 | 70 | 장성 | 506,000 | | | |
| 11 | 광주 | 504,000 | 41 | 서천 | 472,000 | 71 | 정선 | 489,000 | | | |
| 12 | 괴산(중평) | 458,000 | 42 | 성산 | 537,000 | 72 | 정읍 | 506,000 | | | |
| 13 | 구미 | 498,000 | 43 | 세종 | 462,000 | 73 | 제천(단양) | 466,000 | | | |
| 14 | 군산 | 478,000 | 44 | 속초(고성) | 496,000 | 74 | 진주 | 525,000 | | | |
| 15 | 금산 | 478,000 | 45 | 순창(곡성) | 519,000 | 75 | 진천 | 448,000 | | | |
| 16 | 김제 | 484,000 | 46 | 순천(함양) | 534,000 | 76 | 창원 | 537,000 | | | |
| 17 | 김천(무주) | 493,000 | 47 | 신안 | 526,000 | 77 | 천안 | 445,000 | | | |
| 18 | 김해(창녕, 거창, 구례) | 545,000 | 48 | 아산 | 436,000 | 78 | 철원 | 455,000 | | | |
| 19 | 나주 | 523,000 | 49 | 안동(의성, 군위) | 497,000 | 79 | 청양 | 456,000 | | | |
| 20 | 논산 | 478,000 | 50 | 양구(화천) | 478,000 | 80 | 청원 | 458,000 | | | |
| 21 | 담양 | 514,000 | 51 | 양산 | 558,000 | 81 | 청주 | 458,000 | | | |
| 22 | 당진 | 438,000 | 52 | 양양 | 504,000 | 82 | 춘천 | 468,000 | | | |
| 23 | 대구 | 512,000 | 53 | 여수 | 539,000 | 83 | 충주 | 458,000 | | | |
| 24 | 대전 | 469,000 | 54 | 영덕(청송) | 516,000 | 84 | 칠곡(성주) | 505,000 | | | |
| 25 | 동해 | 505,000 | 55 | 영동 | 484,000 | 85 | 태백 | 490,000 | | | |
| 26 | 목포 | 525,000 | 56 | 영월 | 474,000 | 86 | 태안 | 449,000 | | | |
| 27 | 무안 | 517,000 | 57 | 영천 | 526,000 | 87 | 평창 | 472,000 | | | |
| 28 | 문경 | 475,000 | 58 | 예산 | 449,000 | 88 | 포항 | 538,000 | | | |
| 29 | 밀양 | 539,000 | 59 | 예산 | 482,000 | 89 | 함평 | 515,000 | | | |
| 30 | 보령 | 461,000 | 60 | 오창, 청원 | 451,000 | 90 | 해남 | 541,000 | | | |